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3회 임시회(10. 11. ~ 10. 20.)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23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20건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023. 10. 20.)
기획행정 위원회 (5)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윤순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수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기영 의원	수정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3)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심오섭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순옥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제용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기 의원	원안가결
경제산업 위원회 (1)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기홍 의원	수정가결
안전건설 위원회 (6)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규만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숙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숙희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최규만 의원	수정가결
교육 위원회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이영욱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김희철 의원	수정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성운 의원	원안가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용래 의원	원안가결

《참고 : 조례 제정 절차 등》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23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3. 10. 20.(금)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 공포)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 요구 조례안의 확정)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례의 효력 발생)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김정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1),
박대현 의원(경제산업위원회 · 국민의힘 · 화천),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엄기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철원2), 이지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자체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접경지역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전입금,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접경지역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및 경상경비 지출이며 그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엄윤순 의원



김용복 의원



김정수 의원



박대현 의원



양숙희 의원



엄기호 의원



이지영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1)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조례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계기관리공무원은 인영에 수수료,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및 요금계기 고유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요금계기를 관리해야 하며,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 세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기관명, 요금계기 고유번호 및 발행개시연월일(또는 폐기연월일)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체 기한까지 도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또한 종이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수입증지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김길수 의원(기획행정위원장 · 국민의힘 · 영월1)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구 수정 등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경우 입법 이유, 입법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 내용 및 예산 조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 입법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③ 도지사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되,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작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비용추계서 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송부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한창수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횡성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반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주요 강원특별자치도정 현안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연구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등을 포함한다) 사업,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 도지사 공약사항,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중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3)

■ 공동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발주청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및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의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발주청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제로 관리하고, 매년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박기영 의원

양숙희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 대표발의 : 심오섭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2)

■ 공동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차세대 게임 인력 양성, 게임 제작 및 유통 지원, 게임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제게임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및 게임과몰입 예방·상담 및 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공로가 큰 개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심오섭 의원

양숙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유순옥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유통의약품 수거 · 검사, 방문약료 활성화,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및 노인, 소아, 임산부, 간질환자, 신질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상기 열거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원제용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6)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구분하여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도사 편찬 지침 및 운영 방안, 도사 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 보존 · 조사 · 연구 및 도사 원고의 심사 등을 심의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를 둔다.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홍성기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2)

■ 공동발의 : 김용복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고성),
박호균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1),
윤길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영월2),
최종수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평창2)

강정호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속초1),
엄윤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인제),
전찬성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8),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 등을 법령과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및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사람은 수목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고, 시설물 개 · 보수,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관람자가 수목원에서 수목, 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 · 식물 등을 채집 · 채취하는 행위, 종교의식, 집단오락 및 소란 행위,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및 오물 · 쓰레기 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 등을 할 경우 강제퇴장을 명할 수 있다.



홍성기 의원



김용복 의원



강정호 의원



박호균 의원



엄윤순 의원



윤길로 의원



전찬성 의원



최종수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의 : 김기홍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원주3)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①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의 현황, 전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판로 및 경영안정 지원,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 지원,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단체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지원,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정착지원 및 반도체산업 관련 행사 개최·유치 및 참여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반도체산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 :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안전문화를 진흥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은 13세 미만의 영유아 및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거주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마스크 등 용품 제공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물품 제공,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주민 및 재난 관련 단체 등이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을 하는 경우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및 안전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춘천6)
- 공동발의 : 박기영 의원(안전건설위원장·국민의힘·춘천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반영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댐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또는 재검토에 관한 사항,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및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양숙희 의원



박기영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춘천6)
- 공동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강릉3), 지광천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평창1),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횡성2), 최승순 의원(기획행정위원회·국민의힘·강릉5),
최재민 의원(안전건설위원회·국민의힘·원주4)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요 지역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등 설치를 지원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별표로 정하는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 및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양숙희 의원



김용래 의원



지광천 의원



최규만 의원



최승순 의원



최재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 공동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하석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국민의힘 · 원주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주택 중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소년소녀가장 · 한부모가정 주택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및 강원특별자치도 내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등인 경우 주택용소방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 군수는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 · 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축 ·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 · 안내해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양숙희 의원



조성운 의원



하석균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 공동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심의 ·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주거정책심의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나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한다.



양숙희 의원



조성운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발의 : 최규만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보도 신설 · 개축 · 수선 · 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지방도 보도 설치 및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도 보도공사 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 구간, 공사 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 · 보행자겸용도로 · 편의시설 ·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 발의 : 이영욱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홍천1)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발의 : 김희철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2)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적 책무와 예방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생 자살예방 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기학생과 그 가족 및 자살학생 · 위기학생과 관련된 교직원에게 심리상담 ·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조성운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삼척1)

■ 공동발의 : 양숙희 의원(안전건설위원회 · 국민의힘 · 춘천6)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조례의 제명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실천학교 운영, 교원 환경교육 연수 및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조성운 의원

양숙희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발의 : 김용래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강릉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편의 증대 및 행정효율성의 향상을 위하여 민원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콜센터는 접수된 민원의 상담·처리, 민원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민원 응대 표준매뉴얼 구축·관리 및 상담·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수행한다. ③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의 업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원인의 고성·욕설·폭언·성희롱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대처 기준의 마련·교육,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의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